

Deloitte Newsletter

2014년 6월



⚠️ 딜로이트 주요서비스

Deloitte Private (기업승계자문그룹)

상속·증여 등 기업 오너 및 재산가를 위한 '포괄적' 자문업무

“승계는 제 2의 창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는 반면, 기업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폭 경감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2011),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2014) 등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조세 회피 방지와 부자 증세 정책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201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2012),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 FIU 금융정보의 활용 확대, 차명계좌 및 차명거래 금지법을 개정(2014), 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의 체결(2014)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2011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돼 상속신탁제도가 도입됐고, 민법에서는 배우자 선취분 상속제도가 검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자 증세와 조세회피 방지대책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 복지 수요의 증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복잡한 법률 및 조세제도 하에서 기업의 세대간 승계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과 실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Deloitte Private 그룹은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증여, 기업승계, 상속 재산의 분할, 주식 이동,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신탁,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활동 관련 세무계획 수립, 세무신고, 세무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자산가들의 국외이동 등 Global Mobility에 따른 국제 상속·증여, 사업확장 및 M&A 등 Cross-border 관련 업무도 Deloitte의 Global Network를 활용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관련 자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Deloitte Private은 전직 국세청 및 세제실 출신의 조세전문가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그리고 미국의 조세전문가로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금년 6월 1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오너와 재산가들의 조세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ntact Point

김종래 전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Deloitte Private Leader
Tax Partner
02 6676 2419
joongkim@deloitte.com

김희슬 상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Deloitte Private
Tax Director
02 6676 2520
heesokim@deloitte.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